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평 가 의뢰인 울산남부신협 삼산지점장
건 명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제201호 외
문 서 번 호 -
감정평가서번호 미래새한 2504-63-09001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

Mirae & Saehan Appraisal Co.,LTD

TEL : (052)265-0055 FAX : (052)265-0060





감정평가 심의인증서

제 출 처	울산남부신협 삼산지점		
발 의 처	울산지사	감정서번호	2504-63-09001
평가목적	공매	담당평가사	허영근
물건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1동 2층 201호 외		
감정평가액	₩ 3,150,700,000		

◆ 심의 내용

1. 감정평가 가격의 적정성
2. 감정평가 방법의 적정성
3. 평가자료채택 및 기재내용의 적정성
4. 관련법규 및 제규정과와의 적합성
5. 협약내용 및 협조사항의 이행
6. 기타 감정평가에 관련된 사항

본 감정평가서는 우리 법인의 감정평가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심의하였으며, 제 규정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감정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위 감정평가서는 우리 법인의 감정평가심의위원회 규정의 심의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되었기에 본 심의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
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허영근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
대표자 허영근

감정평가액 삼십일억오천칠십만원정 (₩3,150,700,000.-)

의뢰인 채무자 소유자 (대상업체명)	울산남부신협 삼산지점장		감정평가 목적		구매	
			제출처		울산남부신협 삼산지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목록 표시 근거			2025-04-09		2025-04-09	2025-04-14
감정평가내용	공부 (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31개호	구분건물	31개호	-	3,150,700,000
			이하	여백		
	합계					₩3,150,700,000.-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 합니다.

심사
확인

심사자
감정평가사

(인)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페이지:1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1층	212.1			
				2층	317.18			
				3층	317.18			
				4층	317.18			
				5층	302.62			
				6층	302.62			
				7층	302.62			
				준주거지역	526.6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층 제201호	105.08	105.08	210,000,000	비준가액
나		89-13	대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63,000,000 147,000,000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층 제202호	43.46	43.46	86,900,000	비준가액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6,070,000 60,830,000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층 제203호	43.46	43.46	86,900,000	비준가액
다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페이지:2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라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6,070,000 60,830,000	비준가액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층 제204호	43.46	43.46	86,900,000	
마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6,070,000 60,830,000	비준가액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3층 제301호	38.5	38.5	102,000,000	
바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400,000 81,600,000	비준가액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3층 제302호	38.5	38.5	100,000,000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000,000 80,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페이지:3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사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3층 제303호	38.5	38.5	100,000,000	비준가액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000,000 80,000,000	
아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3층 제304호	38.5	38.5	100,000,000	비준가액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000,000 80,000,000	
자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3층 제305호	38.5	38.5	102,000,000	비준가액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400,000 81,600,000	
차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3층 제306호	35.36	35.36	92,000,000	비준가액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배분내역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페이지:4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카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4층 제401호	38.5	토지 : 건물 :	18,400,000 73,600,000	
						38.5	102,000,000	
타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지 : 건물 :	
							20,400,000 81,600,000	
타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4층 제405호	38.5	38.5	102,000,000	비준가액
						38.5	102,000,000	
파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지 : 건물 :	
							20,400,000 81,600,000	
파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4층 제406호	35.36	35.36	92,000,000	비준가액
						35.36	92,000,000	
하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지 : 건물 :	
							18,400,000 73,600,000	
하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5층 제501호	38.5	38.5	102,000,000	비준가액
						38.5	102,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페이지: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		감정평가액	비고
					공부	사정		
거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400,000 81,600,000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5층 제502호	38.5	38.5	100,000,000	
너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000,000 80,000,000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5층 제503호	38.5	38.5	100,000,000	
더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000,000 80,000,000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5층 제504호	38.5	38.5	100,000,000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000,000 80,000,000	
				(내)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페이지: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러				철근콘크리트구조 제5층 제505호	38.5	38.5	102,000,000	비준가액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지 : 20,400,000 건물 : 81,600,000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5층 제506호	35.36	35.36	92,000,000	비준가액
머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지 : 18,400,000 건물 : 73,600,000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6층 제601호	38.5	38.5	102,000,000	비준가액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지 : 20,400,000 건물 : 81,600,000	
버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6층 제602호	38.5	38.5	100,000,000	비준가액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지 : 20,000,000	
				(내)				
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6층 제602호	38.5	38.5	100,000,000	비준가액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지 : 20,000,000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6층 제602호	38.5	38.5	100,000,000	비준가액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페이지:7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어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6층 제603호	38.5	건물 : 38.5	80,000,000 100,000,000	비준가액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000,000 80,000,000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6층 제604호	38.5	38.5	100,000,000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000,000 80,000,000	
저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6층 제605호	38.5	38.5	102,000,000	비준가액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400,000 81,600,000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6층 제606호	35.36	35.36	92,000,000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400,000 81,600,000	
처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6층 제606호	35.36	35.36	92,000,000	비준가액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400,000 81,600,000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6층 제606호	35.36	35.36	92,000,000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400,000 81,600,000	
커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6층 제606호	35.36	35.36	92,000,000	비준가액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400,000 81,600,000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6층 제606호	35.36	35.36	92,000,000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400,000 81,6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페이지: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		감정평가액	비고
					공부	사정		
터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18,400,000 73,600,000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7층 제701호	38.5	38.5	102,000,000	
퍼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400,000 81,600,000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7층 제702호	38.5	38.5	100,000,000	
허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000,000 80,000,000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7층 제703호	38.5	38.5	100,000,000	
고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000,000 80,000,000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페이지:9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노 도				제7층 제704호	38.5	38.5	100,000,000	비준가액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000,000 80,000,000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7층 제705호	38.5	38.5	102,000,000	비준가액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20,400,000 81,600,000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7층 제706호	35.36	35.36	92,000,000	비준가액
				1. 적정	소유권 대지권	포함 토지·건물 토지 : 건물 :	배분내역 18,400,000 73,600,000	
합 계							₩3,150,700,0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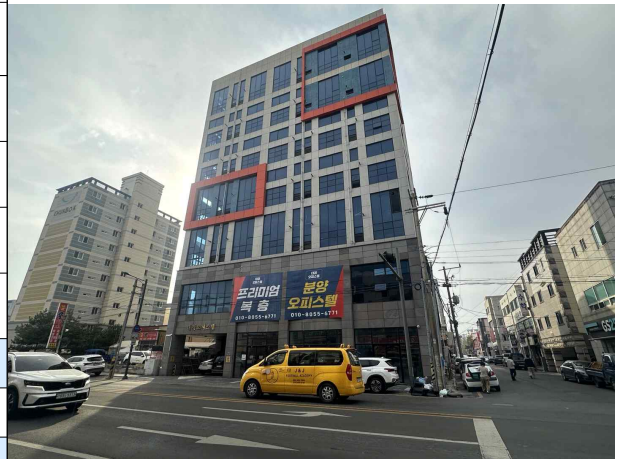
대상물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소재 '상대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 31개호로서, 금융기관에서 의뢰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의 기본적 사항

가. 총괄 개요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건물명 및 동·층·호수	제1동 제2층 제201호 외 30개호		
용도지역	준주거		
주 용 도	제1,2종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용승인일자	2018-12-21		
주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층수(지하/지상)	호/가구/세대	
	-/7	37/-/-	
면 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26.6	317.18	2,121.7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대상물건 개요

일련 번호	동명	층	호	면 적(㎡)				전용률 (%)	용도
				전유부분	공용부분	계약면적	대지사용권		
가	제1동	2	201	105.08	43.0481	148.1281	-	70.9	근린생활시설
나	제1동	2	202	43.46	17.8042	61.2642	-	70.9	
다	제1동	2	203	43.46	17.8042	61.2642	-	70.9	
라	제1동	2	204	43.46	17.8042	61.2642	-	70.9	
마	제1동	3	301	38.5	15.7723	54.2723	-	70.9	오피스텔
바	제1동	3	302	38.5	15.7723	54.2723	-	70.9	
사	제1동	3	303	38.5	15.7723	54.2723	-	70.9	
아	제1동	3	304	38.5	15.7723	54.2723	-	70.9	
자	제1동	3	305	38.5	15.7723	54.2723	-	70.9	
차	제1동	3	306	35.36	14.4859	49.8459	-	70.9	
카	제1동	4	401	38.5	15.7723	54.2723	-	70.9	
타	제1동	4	405	38.5	15.7723	54.2723	-	70.9	
파	제1동	4	406	35.36	14.4859	49.8459	-	70.9	
하	제1동	5	501	38.5	15.7723	54.2723	-	70.9	
거	제1동	5	502	38.5	15.7723	54.2723	-	70.9	
너	제1동	5	503	38.5	15.7723	54.2723	-	70.9	
더	제1동	5	504	38.5	15.7723	54.2723	-	70.9	
러	제1동	5	505	38.5	15.7723	54.2723	-	70.9	
머	제1동	5	506	35.36	14.4859	49.8459	-	70.9	
버	제1동	6	601	38.5	15.7723	54.2723	-	70.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 번호	동명	층	호	면 적(㎡)				전용률 (%)	용도
				전유부분	공용부분	계약면적	대지사용권		
서	제1동	6	602	38.5	15.7723	54.2723	-	70.9	오피스텔
어	제1동	6	603	38.5	15.7723	54.2723	-	70.9	
저	제1동	6	604	38.5	15.7723	54.2723	-	70.9	
처	제1동	6	605	38.5	15.7723	54.2723	-	70.9	
커	제1동	6	606	35.36	14.4859	49.8459	-	70.9	
터	제1동	7	701	38.5	15.7723	54.2723	-	70.9	
퍼	제1동	7	702	38.5	15.7723	54.2723	-	70.9	
허	제1동	7	703	38.5	15.7723	54.2723	-	70.9	
고	제1동	7	704	38.5	15.7723	54.2723	-	70.9	
노	제1동	7	705	38.5	15.7723	54.2723	-	70.9	
도	제1동	7	706	35.36	14.4859	49.8459	-	70.9	
합 계				1,259.26	515.8808	1,775.1408	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기준가치

가. 개 요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즉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공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4.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없 음.

5.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4월 09일을 기준시점으로 정함.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상물건은 2025년 04월 09일자 현장실사를 통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의 관련규정 및 적용방법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함.

2. 감정평가 관련 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 <2020. 2. 4.>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가. 대상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인근지역 내 유사한 부동산의 일반적인 거래사례와 위치,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치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전유부분과 공용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음.

나.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별로 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대상물건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성이 높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원가방식, 수익방식)의 적용이 불필요하거나 적용에 한계가 있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4.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대상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에 따라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전유부분과 공용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그 밖의 사항

- 가. 대상물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 상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황 벽체로 구분되어 구조 및 이용상 독립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로서, 위치확인서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 및 현황 점유/사용중인 부분에 의거 확인하였음.
- 나. 대상물건은 기준시점 현재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이 배분되지 않은 상태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을 가지며, 구분건물은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점 등에 따라 추후 적정 대지지분이 확정이전될 것을 감안하여 건물과 일체로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나, 귀 금융기관 요청에 의거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제시한 집합건물 구분평가 시 토지, 건물 배분비율 등을 참작하여, 토지, 건물의 배분금액을 감정평가명세표에 표시하였음.
- 라. 대상물건은 기준시점 현재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해 귀 금융기관과 협의 후 집합건축물대상상 등재된 현황도면을 참고하여 외부관찰 및 탐문조사 등을 통해 통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에 참고한 자료

가. 인근지역 거래사례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이용상황	거래일자	전유면적 (㎡)	단가 (원/㎡)	거래금액 (원)	비고
				사용승인일				
㉠	죽도동 568-11	죽도동상가 -/2/207	일반음식점	2024-06-20 2006-06-30	76.5	3,400,000	260,000,000	-
㉡	죽도동 52-2	굿모닝메디칼센터 -/6/601	의원	2024-08-16 2008-11-26	325.12	2,350,000	763,200,000	-
㉢	죽도동 604-23	죽도 신성펠리스 2차 102/2/205	아파트	2024-09-26 2016-05-30	59.2098	3,210,000	190,000,000	-

나. 인근지역 감정평가사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이용상황	기준시점	전유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원/㎡)	감정평가액 (원)	평가 목적
				사용승인일				
①	대도동 89-13	제1동/2/202	사무소	2023-04-03 2018-12-21	43.46	1,910,000	83,000,000	공매
②	대도동 89-13	제1동/5/501	오피스텔	2023-04-03 2018-12-21	38.5	2,650,000	102,000,000	공매
③	대도동 89-13	제1동/5/503	오피스텔	2023-04-03 2018-12-21	38.5	2,600,000	100,000,000	공매
④	죽도동 604-23	죽도 신성펠리스 2차 102동/5/504	아파트	2022-06-10 2016-05-30	59.7275	3,160,000	189,000,000	법원경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 거래가격수준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층수	전유면적 기준 가격수준(원/㎡)	비고
상대초등학교 인근	사무소	2층	2,000,000원/㎡ 내외 수준	-
상대초등학교 인근	오피스텔	3층~7층	2,600,000원/㎡ 내외 수준	-

라. 경매통계 분석

■ 6개월 평균

[출처: 인포케어]

용도	경 북			포 항 시 남 구			대 도 동		
	낙찰 가율	낙찰률 평균	낙찰 건수	낙찰 가율	낙찰률 평균	낙찰 건수	낙찰 가율	낙찰률 평균	낙찰 건수
집합건물 / 오피스텔(주거)	67.92	68.93	39	73.17	73.17	1	0	0	0
상가 / 점포	54.41	57.03	24	51.72	57.36	3	0	0	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개 요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비준가액	≒	거래사례 가격(원/㎡)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	---	---

나. 비교사례 선정

■ 거래사례 선정 기준

감정평가실무기준 3.3.1.2 [거래사례의 수집 및 선택]

- ①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 ②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
- ③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 거래사례의 선정 및 그 사유

상기 거래사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전반적으로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대상물건	비교사례 선정
일련번호 가~라	거래사례 ㉠
일련번호 마~도	거래사례 ㉡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이용상황	거래시점	전유면적 (㎡)	단가 (원/㎡)	거래금액 (원)
				사용승인일			
㉠	죽도동 568-11	죽도동상가/2/207호	일반음식점	2024-06-20 2006-06-30	76.5	3,400,000	260,000,000
㉡	죽도동 604-23	죽도 신성펠리스 2차 102동/2/205	아파트	2024-09-26 2016-05-30	59.2098	3,210,000	19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라.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지가변동률, 한국은행에서 조사·발표한 부동산지수(생산자물가지수)는 전국단위의 가격지수로서, 가격변동추이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한 ‘자본수익률 및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유형별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하였음.

■ 자본수익률

[출처: 한국부동산원]

대상물건	비교사례	지 역	유 형	기 간	자본수익률(%)
가~라	㉠	경북 포항도심	집합상가	2024년 02분기	0.13
				2024년 03분기	0.08
				2024년 04분기	-0.58
				2025년 01분기 이후	-

■ 산정방법 : 기준시점 현재 발표되지 아니한 분기의 자본수익률은 기준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최종 조사·발표된 분기별 자본수익률을 기준으로 추정함.

■ 매매가격지수

[출처: 한국부동산원]

대상물건	비교사례	지 역	유 형	거래시점(사례)	매매가격지수 적용치
				기준시점(대상)	
마~도	㉡	경북 포항시	아파트	2024년 08월	96.0
				2025년 02월	94.9

■ 산정방법 : 기준시점(또는 거래시점)의 각 직전달의 매매가격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함. 다만, 기준시점(또는 거래시점)이 2021년 06월 이전인 경우 그 달의 15일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 이후이고, 감정평가시점 당시에 기준시점(또는 거래시점)이 속하는 달의 매매가격지수가 조사·발표된 경우에는 기준시점이 속하는 달의 지수로 비교하여 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시점수정치 결정

대상물건	비교사례	지 역 (산정기간)	계 산 식	시점수정치
가~라	㉠	경북 포항도심(집합상가) (2024-06-20 ~ 2025-04-09)	$(1+0.0013 \times 11/91) \times (1+0.0008) \times (1-0.0058) \times (1-0.0058 \times 99/92) \approx 0.98894$	0.98894
마~도	㉡	경북 포항시(아파트) (2024-09-26 ~ 2025-04-09)	$94.9/96.0 \approx 0.98854$	0.9885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결정

■ 일련번호 가~라 / 비교사례 ㉠

조 건	세 부 항 목 (상업용)	비 교 치		검 토 의 건
		비교사례	대상물건	
단지 외부요인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0.70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상가의 성숙도 등에서 열세함.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의 폭, 구조 등)			
단지 내부요인	단지 내 주차의 편리성	1.00	0.85	건물의 구조 등에서 우세하나 건물 전체의 공실률 등에서 열세하여 종합적으로 열세함.
	건물 전체의 공실률			
	건물의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 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1.00	1.00	대등함.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등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0.59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일련번호 마,자,카,타,하,러,버,처,터,노 / 비교사례 ㉔

조 건	세 부 항 목 (주거용)	비 교 치		검 토 의 건
		비교사례	대상물건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1.00	0.90	대중교통의 편의성, 편익시설과의 배치 등에서 열세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폭, 구조 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경관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0.93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등에서 열세함.
	단지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별 요인	층별 효용	1.00	1.00	대등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등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0.83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일련번호 바~아,차,파,거~더,머,서~저,커,퍼~고,도 / 비교사례 ㉔

조 건	세 부 항 목 (주거용)	비 교 치		검 토 의 건
		비교사례	대상물건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1.00	0.90	대중교통의 편의성, 편익시설과의 배치 등에서 열세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폭, 구조 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경관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0.93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등에서 열세함.
	단지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별 요인	층별 효용	1.00	0.98	향별 효용 등에서 열세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등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0.82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번호	비교 사례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전유면적 (㎡)	산정가액 (원)	시산가액 (원)
가	㉠	3,400,000	1.000	0.98894	0.595	2,000,625	105.08	210,225,675	210,000,000
나	㉠	3,400,000	1.000	0.98894	0.595	2,000,625	43.46	86,947,163	86,900,000
다	㉠	3,400,000	1.000	0.98894	0.595	2,000,625	43.46	86,947,163	86,900,000
라	㉠	3,400,000	1.000	0.98894	0.595	2,000,625	43.46	86,947,163	86,900,000
마	㉡	3,210,000	1.000	0.98854	0.837	2,655,979	38.5	102,255,192	102,000,000
바	㉡	3,210,000	1.000	0.98854	0.820	2,602,034	38.5	100,178,309	100,000,000
사	㉡	3,210,000	1.000	0.98854	0.820	2,602,034	38.5	100,178,309	100,000,000
아	㉡	3,210,000	1.000	0.98854	0.820	2,602,034	38.5	100,178,309	100,000,000
자	㉡	3,210,000	1.000	0.98854	0.837	2,655,979	38.5	102,255,192	102,000,000
차	㉡	3,210,000	1.000	0.98854	0.820	2,602,034	35.36	92,007,922	92,000,000
카	㉡	3,210,000	1.000	0.98854	0.837	2,655,979	38.5	102,255,192	102,000,000
타	㉡	3,210,000	1.000	0.98854	0.837	2,655,979	38.5	102,255,192	102,000,000
파	㉡	3,210,000	1.000	0.98854	0.820	2,602,034	35.36	92,007,922	92,000,000
하	㉡	3,210,000	1.000	0.98854	0.837	2,655,979	38.5	102,255,192	102,000,000
거	㉡	3,210,000	1.000	0.98854	0.820	2,602,034	38.5	100,178,309	10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 번호	비교 사례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전유면적 (㎡)	산정가액 (원)	시산가액 (원)
너	㊟	3,210,000	1.000	0.98854	0.820	2,602,034	38.5	100,178,309	100,000,000
더	㊟	3,210,000	1.000	0.98854	0.820	2,602,034	38.5	100,178,309	100,000,000
러	㊟	3,210,000	1.000	0.98854	0.837	2,655,979	38.5	102,255,192	102,000,000
머	㊟	3,210,000	1.000	0.98854	0.820	2,602,034	35.36	92,007,922	92,000,000
버	㊟	3,210,000	1.000	0.98854	0.837	2,655,979	38.5	102,255,192	102,000,000
서	㊟	3,210,000	1.000	0.98854	0.820	2,602,034	38.5	100,178,309	100,000,000
어	㊟	3,210,000	1.000	0.98854	0.820	2,602,034	38.5	100,178,309	100,000,000
저	㊟	3,210,000	1.000	0.98854	0.820	2,602,034	38.5	100,178,309	100,000,000
처	㊟	3,210,000	1.000	0.98854	0.837	2,655,979	38.5	102,255,192	102,000,000
커	㊟	3,210,000	1.000	0.98854	0.820	2,602,034	35.36	92,007,922	92,000,000
터	㊟	3,210,000	1.000	0.98854	0.837	2,655,979	38.5	102,255,192	102,000,000
퍼	㊟	3,210,000	1.000	0.98854	0.820	2,602,034	38.5	100,178,309	100,000,000
허	㊟	3,210,000	1.000	0.98854	0.820	2,602,034	38.5	100,178,309	100,000,000
고	㊟	3,210,000	1.000	0.98854	0.820	2,602,034	38.5	100,178,309	100,000,000
노	㊟	3,210,000	1.000	0.98854	0.837	2,655,979	38.5	102,255,192	102,000,000
도	㊟	3,210,000	1.000	0.98854	0.820	2,602,034	35.36	92,007,922	92,000,000
합 계							1,259.26	-	3,150,7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주된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대상물건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성이 높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주된 평가방법 외에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적용에 한계가 있음.

본 평가는 전술된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참고자료(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경매시장 추이 등)'를 종합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 결정

일련 번호	소재지	건물명·동명	층	호	전유면적 (㎡)	산정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2	201	105.08	2,000,625	210,000,000
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2	202	43.46	2,000,625	86,900,000
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2	203	43.46	2,000,625	86,900,000
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2	204	43.46	2,000,625	86,900,000
마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3	301	38.5	2,655,979	102,000,000
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3	302	38.5	2,602,034	100,000,000
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3	303	38.5	2,602,034	100,000,000
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3	304	38.5	2,602,034	10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 번호	소재지	건물명 · 동명	층	호	전유면적 (㎡)	산정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3	305	38.5	2,655,979	102,000,000
차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3	306	35.36	2,602,034	92,000,000
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4	401	38.5	2,655,979	102,000,000
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4	405	38.5	2,655,979	102,000,000
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4	406	35.36	2,602,034	92,000,000
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5	501	38.5	2,655,979	102,000,000
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5	502	38.5	2,602,034	100,000,000
너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5	503	38.5	2,602,034	100,000,000
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5	504	38.5	2,602,034	100,000,000
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5	505	38.5	2,655,979	102,000,000
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5	506	35.36	2,602,034	92,000,000
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6	601	38.5	2,655,979	102,000,000
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6	602	38.5	2,602,034	100,000,000
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6	603	38.5	2,602,034	100,000,000
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6	604	38.5	2,602,034	100,000,000
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6	605	38.5	2,655,979	102,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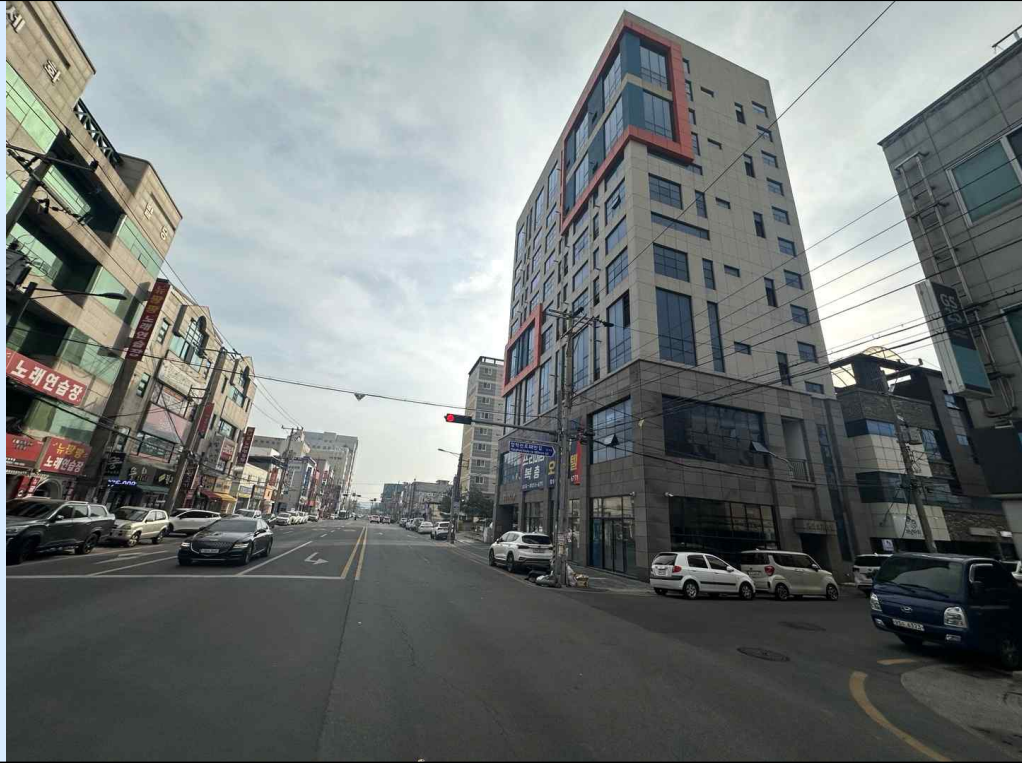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 번호	소재지	건물명 · 동명	층	호	전유면적 (㎡)	산정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6	606	35.36	2,602,034	92,000,000
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7	701	38.5	2,655,979	102,000,000
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7	702	38.5	2,602,034	100,000,000
허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7	703	38.5	2,602,034	100,000,000
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7	704	38.5	2,602,034	100,000,000
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7	705	38.5	2,655,979	102,000,000
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7	706	35.36	2,602,034	92,000,000
합 계				31개호	1,259.26	-	3,150,700,000

- 끝 -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대 상 물 건
(주 위 환 경)



지 리 적 위 치 및 주 위 환 경	대상물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소재 '상대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 통 상 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및 이 용 상 태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 외 30개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18-12-21) 외 벽: 스톤코트 및 치장석 등 마감, 내 벽: 몰탈위페인팅, 타일 붙임 등 마감, 창 호: 강화유리 및 샷시 창호임. ■이용상태 일련번호 가~라: 근린생활시설 용도임. 일련번호 마~도: 오피스텔 용도임.
위생/냉·난방설비 및 기타 부대설비 토지의 형상 및 이 용 상 태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타워설비(총32대)등이 되어 있음.
접 면 도 로 상 황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 지 이 용 계 획 및 공 법 상 제 한 사 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 부 와 의 차 이	없 음.
임 대 관 계 및 기 타 사 항	미 상 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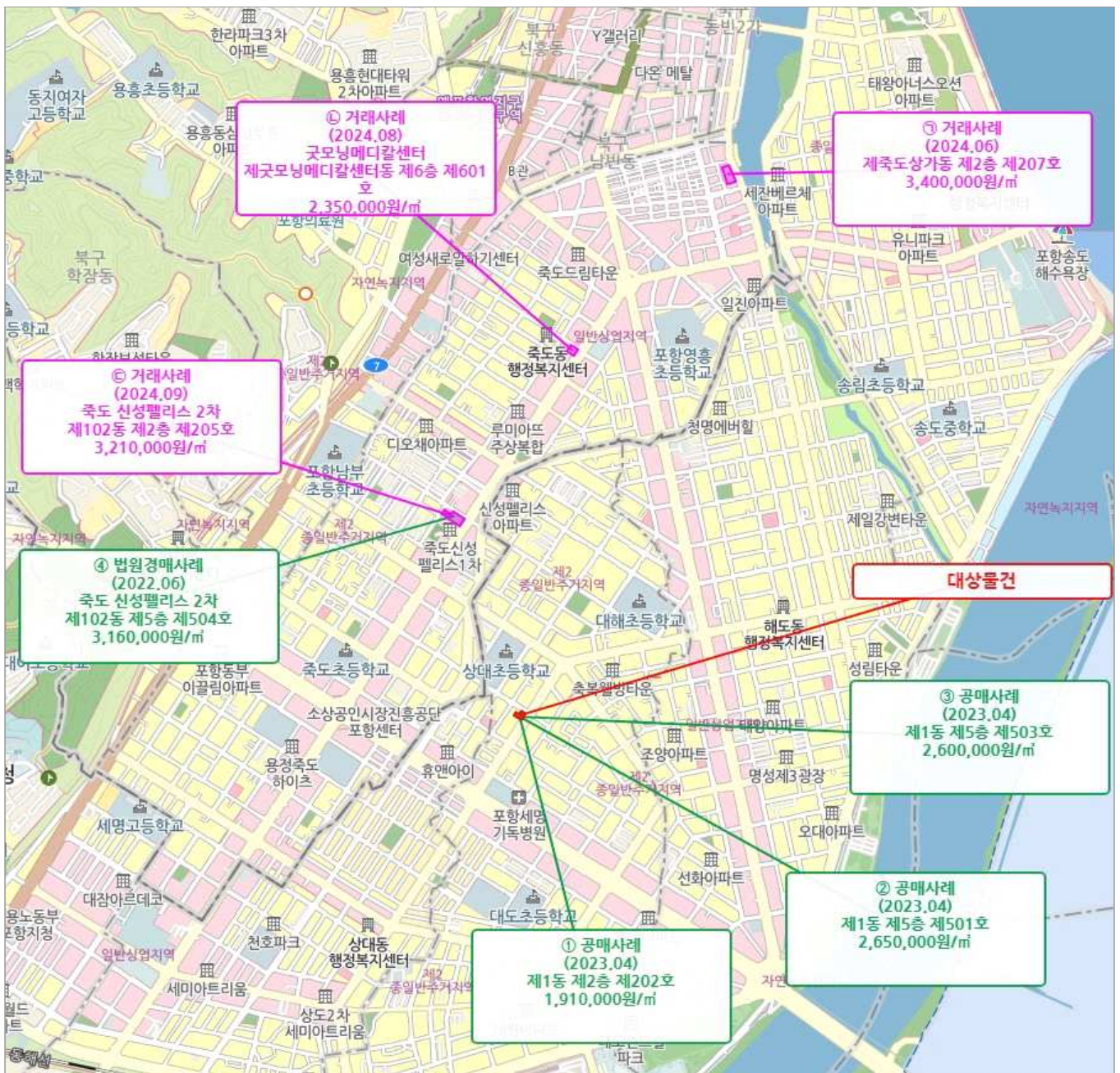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제201호 외



상 세 위 치 도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9-13 제1동 제201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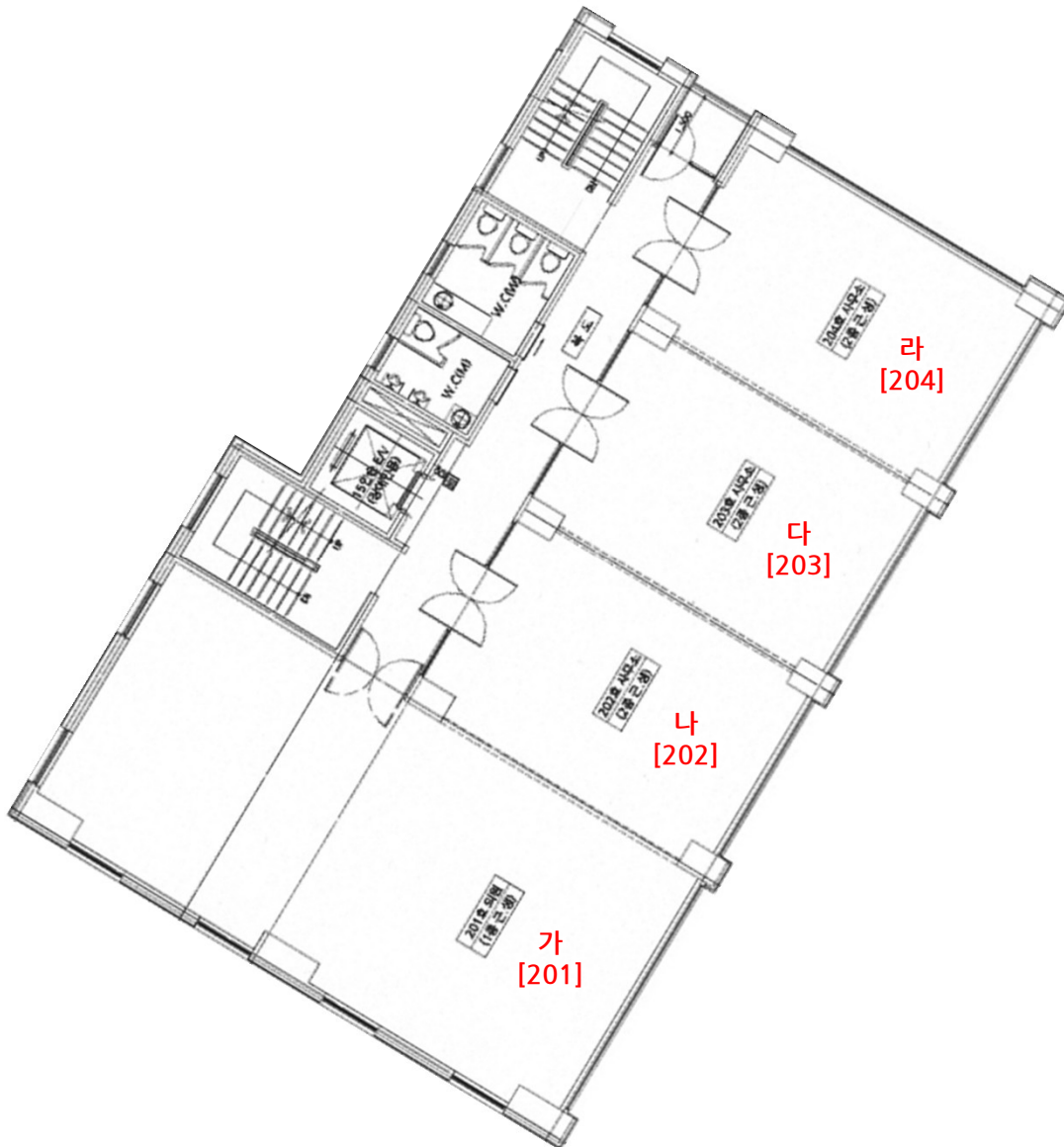


건물이용 및 임대개황도



S = NONE SCALE

대도동 89-13 제1동 제2층 호별배치도



임대상황	임대부분	임차인	임대내역		비고
			임대차보증금	월임대료	
	가~라 전체	미	상	임	-

건물이용 및 임대개황도



S = NONE SCALE

대도동 89-13 제1동 제3~4층 호별배치도



임대상황	임대부분	임차인	임대내역		비고
			임대차 보증금	월임대료	
	마~파 전체	미	상	임	-

건물이용 및 임대개황도



S = NONE SCALE

대도동 89-13 제1동 제5~7층 호별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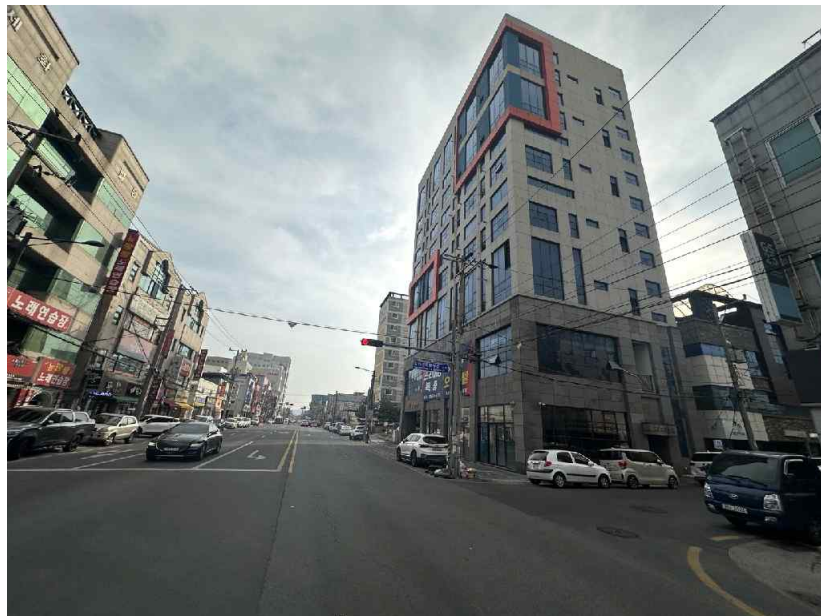


임대상황	임대부분	임차인	임대내역		비고
			임대차보증금	월임대료	
	하~도 전체	미	상	임	-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전경



대상물건 인접도로 및 주위환경

사 진 용 지



기계식 주차장 부분